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600호

「국립항공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」(국토교통부훈령 제853호, 2017.5.30.)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17일

국토교통부장관

국립항공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국립항공박물관법에 따라 박물관 자료의 수집, 관리 등을 박물관장이 결정·관리하도록 하고,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내 유물수집실무검토팀, 보험감정팀 등 운영의무를 삭제하는 등 규정을 현행화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유물·자료 등 수집·관리 업무 주체 현행화(안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23조, 제25조, 제26조, 제28조, 제29조, 제30조, 제31조, 제32조, 제33조, 제34조, 제35조, 제36조, 제37조, 제38조, 제39조, 제40조, 제41조, 제42조, 제43조, 제44조, 별지 제1호·제5호·제6호·제7호·제8호·제9호·제10호·제11호·제12호·제13호·제25호·제26호·제27호 서식)
- 국립항공박물관법에 따라 자료 관리 등 업무를 관장이 결정·관리하도록 함치(국토교통부장관→국립항공박물관장)

나. 국토부 내 유물수집실무검토팀, 보험감정팀 등을 구성·운영하도록 한 조항 삭제(안 제45조, 제2절)

다. 용어 변경(유물→자료, 감정→평가) (훈령명, 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23조, 제25조, 제26조, 제27조, 제28조, 제29조, 제30조, 제31조, 제32조, 제33조, 제34조, 제35조, 제36조, 제37조, 제38조, 제39조, 제40조, 제41조, 제42조, 제43조, 제44조, 제46조, 제47조, 별지 제1호·제2호·제3호·제4호·제5호·제6호·제7호·제8호·제9호·제10호·제11호·제12호·제13호·제14호·제15호·제16호·제17호·제18호·제18-2호·제19호·제19-2호·제20호·제20-2호·제21-2호·제22-2호·제23호·제26호·제27호·제29호·제30호·제31호 서식)

라. 존속기한 설정(안 제48조)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항공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건

나. 보내실 곳

○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636호

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

○ 전화 : 044-201-4059, 4180 / 팩스 : 044-201-5263